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단22986(본소), 2021가단5240595(반소)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희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우

변론 종결2022. 12. 15.

판결 선고2023. 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1. 9.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7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9. 4. 21.자로 아래 나, 다.항에서 보는 경기 수정구 C, D의 실내 내장공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설계금액 1억 원(부가세 별도)

○설계기간 2019. 4. 22.부터 6. 30.까지

○제7조(설계 대금 지불 방법)

가. 선금금 (50%)

계약체결 후 2일 이내에 입금

나. 잔금 (50%)

공사 중도금 입금 후 2일 이내에 입금

○제9조

본 설계계약은 건축공사비 평당 ₩5,000,000만원에 준한 설계금액이며 공사비 평당 금액의 증액에 따라 설계금액이 추가발생한다.(그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의 법적 효력은 원고가 E1) 번지의 공사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나. F, G는 C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 4. 24. 원고에게 그 신축공사에 관하여 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하고, 피고(상호 'H')에게는 위 신축공사 중 실내 내장공사에 관하여 1억 7,80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모두 착공일은 5. 10., 공사 완료예정일은 9. 30.로 정하였다(이후 건물을 신축하여 9. 3. 사용승인 받음).

다. I, J는 D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 5. 1. 원고에게 그 신축공사에 관하여 7억 6,500만 원에 도급하고, 피고에게는 위 신축공사 중 실내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실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억 8,98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모두 착공일은 5. 10., 공사 완료예정일은 9. 30.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8.자로 원고와 이 사건 실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9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9. 11.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K이 건축주의 대리인 지위에서 2019. 12. 9. D 공사 현장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고, 2020. 1. 7. 원고 측에 공사 관련 보완을 요구하면서 누락된 사항을 잔금 지급할 때 반영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4. 24. 발코니 무단증축 등이 발견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실내 내장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인 4억 6,800만 원을 받은 C과 달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건물 외형에 관한 부분만 도급받았고, 실내 내장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건축주와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실내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에 맞는 자재를 발주하여 납품 받는 등 공사를 모두 수행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정한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9,790만 원(=공사대금 8,900만 원+부가가치세 890만 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본소로 청구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L동 건물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M이고, M이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테리어 설계도서의 작성 및 검토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실내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면허대여자인 원고의 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실내공사 대부분은 피고가 직접 수행하고, M이 일부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자신이 한 공사 부분 또는 기성고를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2., 8. 13. 인테리어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설계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용역비 1억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반소로 구한다.

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실내공사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실내공사에 관하여 따로 원고에게 하도급한 후 원고 측 M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이 한 공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자체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갑 제2, 5, 10 내지 13,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실내 내장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작성한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제5호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을 납품받지 못하였다고 다투었고, 심지어는 건축허가도면(갑 제8, 9호증)만으로 실내 내장공사를 진행하였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함께 실내 내장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M이 비록 2019. 5. 1.부터 2020. 6. 1.까지 원고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갑 제4, 7호증), 인테리어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 주장에 비춰 M의 실제 역할은 의심스럽다. 게다가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건축주들을 대신하여 위 신축공사를 감독하였는데, 건축허가도면은 건축사사무소 O에서 두 필지 모두 작성했고(다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지연으로 C의 경우 추가 경비를 들여 다른 곳에서 따로 도면을 받았다), 실내 내장공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도면은 피고가 작성·납품했으며, 이 사건 실내공사는 M 개인과 피고가 함께 했다. 즉, M이 이 사건 실내공사를 일부 하다가 포기하여 피고가 마무리했다. 원고는 계약만 하고 공사를 안 했고, M이

원고의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였다.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M에게도 납품했다. 원고가 공사잔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건축공사 중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일부 공정을 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해 2,5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정산합의를 봤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실내공사 공사비로 1억 8,900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줬다'는 취지라서 M이나 원고가 이 사건 실내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공사한 내용에 관한 기성고를 주장, 입증하여 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구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하지 않은 잔여 실내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P와 계약금액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가구공사의 자재 및 시공비로 2020. 6. 15., 9. 29.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Q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3. 18. R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타일공사의 자재 및 시공비로 2020. 9. 29. S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강화마루 공사의 자재 및 시공비로 2020. 1. 22. 경 주식회사 T에 7,047,7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갑 제16, 17호증에 비춰볼 때 그 주장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따른 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먼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이 사건 설계계약서의 해석상 'C의 공사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원고가 D, C의 전체 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에만 그 조건이 성취되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들을 소개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소개비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소개비 지급을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건축주들이 실내 내장공사를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도급하면서 피고가 5. 8. 원고에게 소개비 1억 원을 제외한 8,900만 원을 이 사건 실내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 경우 원고로서는 공사를 모두 마치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피고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소개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같아졌으므로 이 사건 설계계약서는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설령 이 사건 설계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주와 피고로부터 직접 내장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설계도서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하도급한 피고가 이 사건 실내공사를 지시, 감독하기 위하여 설계도서가 필요할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그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실내 내장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오로지 소개 대가로 1억 원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실내공사를 상당 부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따른 설계용역대금으로 1억 1,000만원(=용역비 1억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후일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가 구하는 2019.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1. 9. 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정성균

1) C의 오기임에 대해 서로 다툼이 없다.